



기본적으로 체크하여야 할 조항

구 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위험물 보관	제16조	위험물 등의 보관
	제17조	비상구의 설치
비상구 설치·관리 등	제18조	비상구 등의 유지
	제19조	경보용 설비 등

※ 상기 조항 이외에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관련 법령 및 조항이 있음을 유념한다.



☑ 일터에서 적용하여야 할 유해 · 위험 예방 조치

☑ 위험물 등의 보관

- **별표1에 규정된 위험물질***을 작업장 외의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작업에 필요한 양만 두어야 함

별표1에 규정된 위험물질이란?

화재, 폭발, 급성독성 등의 원인이 되는 위험성을 가진 물질을 말하며,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하면 크게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 인화성 액체, 인화성 가스, 부식성 물질, 급성 독성 물질 7가지 종류로 분류



옥외 위험물질 보관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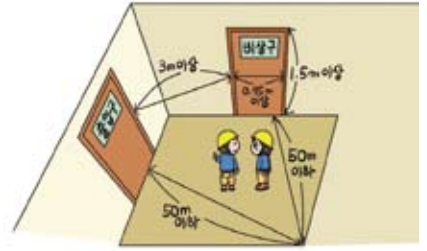
☑ 비상구의 설치

- **별표1에 규정된 위험물질***을 제조 · 취급하는 작업장과 그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의 **출입구**** 외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1개 이상을 다음에 맞는 구조로 설치

** 출입구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 참조



- ① 출입구와 같은 방향에 있지 아니하고, 출입구로부터 3m 이상 떨어져 있을 것
- ② 작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비상구 또는 출입구까지의 수평거리가 50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 ③ 비상구의 너비는 0.75m 이상으로 하고, 높이는 1.5m 이상으로 할 것
- ④ 비상구의 문은 피난 방향으로 열리도록 하고,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 비상구에 문을 설치하는 경우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
- 비상구 · 비상통로 또는 비상용 기구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



- 참고(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3조 공용의 피난용 출입구 등)
건축물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자는 해당 건축물에 피난용 출입구와 통로의 미끄럼방지대 및 피난용 사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2명 이상의 사업주에게 건축물을 대여하여 공용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해당 출입구 등에 “피난용”이란 취지를 표시하여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

국내 비상구 설치대상 관련 법규(예)

구분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의한 비상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 관련 [별표] 2에 의한 비상구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에 의한 비상탈출구
설치대상	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작업장 및 당해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	일정규모 이상의 일반음식점영업, 학원 등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마다 1개 이상	지하층 거실의 바닥면적이 50㎡ 이상인 층
제외대상		1. 주 출입구 외에 해당 영업장 내부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이 주된 출입구로부터 영업장의 긴 변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에 별도로 설치된 경우 2. 피난층에 설치된 영업장(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이 33㎡ 이하인 경우로서~ 이하 생략~)으로서 그 영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출입구까지의 수평거리가 10m 이하인 경우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 설치되어 있는 경우

- 연면적이 400㎡ 이상이거나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작업장에는 비상시에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경보용 설비 또는 기구를 설치



● 참고(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4조 공용의 피난용 출입구 등)

건축물을 대여하는 자는 해당 건축물을 대여 받은 사업주가 위험물이나 그 밖에 폭발성·발화성 물질을 제조·취급하는 경우 또는 해당 건축물을 대여 받은 사업주의 소속 근로자로서 해당 건축물의 내부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가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비상시에 관계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알릴 수 있는 자동경보설비, 비상벨 등의 경보용 설비 또는 휴대용 확성기 등의 경보용 기구를 갖추어 두어 유효하게 작동되도록 유지

경보 설비란?

화재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를 경감하기 위해서 화재 발생 초기단계에서 발생하는 열분해 생성물, 연기 또는 열을 발견하여 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경보장치로 화재발생을 통보하고 신속한 피난을 위해 건물 내에 있는 사람에게 경보를 보내는 설비로서 초기 화재진압과 재난에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한다.

경보설비 종류

비상경보설비(비상벨설비, 자동식사이렌설비, 단독경보형 감지기), 비상방송설비, 누전경보기,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및 가스누설경보기 등



✓ 주요 재해사례

사례 방동제 음용 중독사고

다세대 신축 현장에서 근로자 10명이 방동제가 함유된 물을 사용하여 컵라면을 끓여 먹고 호흡곤란과 의식상실 등을 일으켜 1명이 사망하고 9명이 중독된 재해



재해원인

- 방동제 희석용 용기 및 소분 용기 등에 MSDS 경고표지 미부착
- MSDS 경고표지를 부착하지 않아 방동제가 함유되어 있는지 알 수 없었음
- 방동제 취급 근로자에 대한 MSDS 교육 미실시

예방대책

- 방동제 희석용 용기(현장에서 사용하는 드럼통 등) 및 소분용기(떨어서 사용하는 소형용기)에 MSDS 경고표지 부착
- 방동제 취급 근로자에 대한 MSDS(물질특성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 교육 실시

「일터에서의 유해·위험 예방 조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주요 조항에서 해당 유해·위험 예방 조치 내용을 사진, 삽화 등을 통해 현장에서 좀 더 적용하기 쉽도록 구성한 것으로, 작업 시작 전 안전점검, 위험성평가, 교육 등에 활용하길 바랍니다.